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84
--------	--------	----

제출년월일: 1996. 6. .

제 출 자: 윤찬구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현행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업종의 구분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도요금 부과에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으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제29조(업종의구분)에 3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경우에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하도록 함 (안 제29조 제3항).

나. 가구분할제의 최초의 적용시기는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함.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합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가구당 원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합하여 부과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업종의 구분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합제의 적용은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와 같이 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p> <p>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료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9조(업종의 구분)①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③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p>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 6.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1996. 6. 10
- 나. 제 출 자 : 윤찬구의원의외 4인
- 다. 회부일자 : 1996. 6. 11
- 라. 상정일자 : 1996. 6. 1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덕재 의원)

가. 주요골자

- 현행 제29조(업종의구분)에 3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월 15톤을 가정용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 제3항).
- 가구분할제의 최초의 적용시기는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함.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본조례는 현행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중 수도요금부과에 있어, 업종구분이 불합리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수도요금의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